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22호

우체국예금・보험에 관한 법률 제27조, 동법률시행규칙 제35조, 제37조, 제42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우체국보험종류의 명칭, 약관,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1년 7월 15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체국보험 약관, 보험료, 환급금 등 고시

우체국보험의 종류는 〔별표 1〕, 우체국보험약관에 관한 세부내역은 〔별표 2〕, 우체국보험의 종류별 가입요건・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〔별표3〕과 같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1-9호는 폐지한다.